

UCP 해설

유 하상

제 3 주

UCP 제7조-12조

유 하상

제7조 개설은행의 확약

제7조

■ 제7조개설 은행의 확약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 a.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한, 신용장이 다음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지급 이행하여야 한다.
 - i. 발행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ii.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iii.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을 부담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iv.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정은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v.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b.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지급 이행할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 c. 발행은행은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발행은행에 발송하는 지정은행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 지정은행에 상환할 발행은행의 확약은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확약으로부터 독립한다

제7조 개설은행의 확약

제7조

■ 제7조 해설

UCP 600 제 7조 및 8조는 각각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종전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인수 및 연지급 신용장의 만기전 매입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할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의무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며,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하여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을 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 ① 제7조 a항은 UCP 500 제9조 a 항의 포맷을 따르고 있으며, 8조(확인은행의 약정)과 일치된 형태를 보인다.
- ②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진다.
 - ①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②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나, 지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일람지급되지 않거나, 만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8조

■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 a. 명시된 서류가 확인은행 또는 기타 모든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한, 확인은행은:
 - i .신용장이 다음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행하여야 한다:
 - a. 확인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b.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c.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확약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확약을 부담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d.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정은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e.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ii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환청구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8조

■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 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자행의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자급이행 또는 매입할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 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발송하는 다른 지정은행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른 지정은행에 상환할 확인은행의 확약은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확약으로부터 독립한다.
- d. 어떤 은행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을 확인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받았으나 이를 행할 용의가 없는 경우, 그 은행은 자체 없이 발행은행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확인 없이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8조

■ 제8조 해설

- ① UCP 500 제9조 b 항의 포맷을 따르고 있으며, UCP 600의 7조와 일치된 gudxoff 보이고 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① 신용장이 스스로 일람불 지급, 연불지급 및 인수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②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나, 지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일람지급되지 않거나, 만기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결제(honour)할 수 있다. 다만 개설은행과의 차이점은 확인은행의 경우 신용장을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스스로 매입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②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때로부터 지급/인수 및 매입에 대하여 취소불능한 의무를 진다. 대부분의 경우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를 하거나 소구권 행사 없이 매입을 할 수 있다. UCP 500 14조 a 항에 대응되는 조항으로 확인은행은 직접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거나, 서류를 확인은행 앞으로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해 상환해야 한다.(UCP 600 15조 b 및 c 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8조

■ 제8조 해설

③ 신용장의 확인이란 개설은행의 요청이나 수권에 의하여,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제3의 은행이 지급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확인을 실행하면 신용장 대금에 대한 독립적 채무를 지게 되므로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해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떤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용장을 통지 받은 후 수익자의 청구가 있어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을 받아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ICC의 신용장 통지서 표준양식에서는 통지은행이 신용장 확인을 실행하였다는 뜻을 표시하는 문언으로 “As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e Credit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under UCP 600 Article 8”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은행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이러한 경우는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를 æ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8조

■ 제8조 해설

④ 사례

- 1) 확인은행이 확인을 하면서 14DF 내에 수수료 지급조건으로 확인이 유효하다고 조건을 불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선 또는 SWIFT 전문 등으로 자신이 확인을 하였으며, 만기일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하겠다는 확인을 함으로써 확인은행의 확인은 유효하게 된다.
- 2) 확인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하자로 수리거절된 후, 개설은행에 송부되어 개설은행에서 하자가 승인된 경우, ⑦확인은행이 하자통지한 때부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의무는 없어지는지? ⑧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하는 경우 확인은행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설은행이 결제를 한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 확인은행이 하자통지를 하였다면 수익자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내에 설류를 보완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 전에는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익자의 지시에 의해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 하자 서류를 제시하고 개설은행이 하자를 수리하더라도 확인은행의 하자 통보에 개설은행 수리시 지급한다는 언급이 없었다면 확인은행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8조

■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 a.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어떠한 확약 없이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한다.
- b.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은행은 그 자신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타은행(“제2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제2통지은행은 자신이 수령한 그 통지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 한다
- e. 어떤 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은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해 온 은행에게 이를 자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8조

■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 f. 어떤 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되었지만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은행은 그 지시를 송부해온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게 이를 자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이 그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통지은행에게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8조

■ 제9조 해설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 ☞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뿐 아니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 이는 통지은행이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익자나 제2 통지은행에 전달하는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변경’의 문구와도 문맥을 같이 함.
- ☞ 통지은행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제 2 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제 2 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제2 통지은행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이미 통지를 행한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른 은행인 제 2의 통지은행을 통하여도 신용장을 통지하거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제2 통지은행도, 제1의 통지은행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제2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UCP 600 제9조)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9조

■ 제9조 해설

- ① 신용장과 조건변경서의 통지방법 및 통지요청을 받은 통지은행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통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외견상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즉시 개설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은행은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신용장이 통지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a 항에서는 UCP 500 7조 a의 'without engagement on the part of the Advising Bank(통지은행 측의 약정없이)'를 'without any undertaking to honour or negotiate(결제나 매입에 대한 아무런 의무의 부담 없이)'로 실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즉 통지은행은 책임 없이 그리고 개설은행과의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통지은행의 통지 행위는 통지은행에게 결제나 매입의 의무가 없는 독립된 행위임을 명시한 것이다.
- ③ b 항에서는 Ucp 500 7조 a 항에서 용어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해 진정성 판단기준에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하였던 'Resonable care(상당한 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satisfied itself' 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여 신용장 그 자체의 외견상 총족 요건으로 진정성을 파악하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9조

■ 제9조 해설

④ c 항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2통지은행이란 용어와 역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2통지은행은 개설은행과 제2통지은행 사이에 BKE(은행간 상호 교환된 암호 숫자의 해독) 교환이 되어있지 않거나, SWIFT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개설은행은 일단 환거래 관계가 있는 제1통지은행으로 통지하고 제1통지은행이 다시 제2통지은행으로 신용장 통지를 요청하게 된다.

제1통지은행은 접수된 신용장이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2통지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신용장에 수신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익자 또는 제2통지은행으로 전달함에 있어 외견상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d 항은 UCP 500 11조 b 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용장 당사자들 간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신용장 전달을 위해 동일한 통지은행을 통해서만 신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e 항에서는 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 신용장이나 조건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 이를 자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통지은행이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통지은행이 미국 계 은행인 경우 신용장 내용에 미국에서 금기시하는 SDN List가 있는 경우 통지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용장 통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장 cover letter 상에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9조

■ 제9조 해설

⑦ 사례

- 1) 자유매입신용장을 통지은행인 A은행이 신용장에 첨부되는 통지서에 A은행으로 매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표시하여 통지하였다면, 신용장의 이용 가능 은행을 변경한 A은행의 업무 처리는 UNP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통지은행은 통지서에 통지조건을 명시할수는 있으나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통지은행이 A은행으로 매입은행을 제한하였지만 이것으로 원래의 신용장 조건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로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통지한 신용장의 경우 통지서에 통지은행으로—매입을 제한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 조건을 재확인하여 매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일 경우(일반적으로 통지서에 confirmed라고 표시함)에는 반드시 확인은행에서 매입하여야 한다.

- 2)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 ⑤ 우편신용장 : CD 또는 책자를 통해 은행간에 배포되어지는 서명감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을 대조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나, 실무 처리에서는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개설여부 및 진위여부를 전신으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⑥ 전신신용장(TLX 또는 SWIFT 신용장) : 은행간 상호 교환된 암호 숫자의 해독(BKE) 또는 비밀번호표(Test Key)를 교환하여 진정성을 확인하며, 현재 거의 모든 대다수의 신용장 통지는 SWIFT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제9조

■ 제9조 해설

3) 위조 및 변조 신용장 처리시 유의사항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위조신용장은 주로 stand by L/C 및 유사 Guarantee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조 및 변조 신용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 ⑦ 대부분 1천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다.
- ⑧ 무역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업체나 소규모 개인업체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으며
- ⑨ 정상적인 SWIFT 메시지 타입(MT 760) 아닌 조잡한 우편신용장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용장은 개설신청자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거나 혹은 저리의 대출금 제공 목적이라는 등 사기성이 다분한 내용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반드시 은행을 통한 SWIFT MT 760 등 정상적인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요청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SWIFT CREDIT

DESTINATION KOFBKRSEAXXX SW19950826F50000001

SE55 1384

DATE RCVD 26-AUG-02

SEQU 079607

ORIGINATOR ABSAZAJJAXXX FROM SWIFT

SESS 2178 ABSA BANK, JOHANNESBURG CH. 00 DATE SENT 25-AUG-02

SEQU 288501 (FORMER: VOLKSKASBANK)

: 27 :sequence of total: I / 2

: 40A/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IC04760073362308

: 31C / date of issue: 02/08/24

: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02/09/30 KOREA

: 51D / applicant bank - name/address: ABSA BANK LTD

P O BOX 4888

CAPE TOWN, 8000

: 50 / applicant: RIVIERA FASHIONS

: 59 / beneficiary: YOUNG JEON CO LTD

ROOM 501, YOO-HWA BUILDING

995-16 DAE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 32B / currency code amount: USD 8,100.00

: 39A / pct credit amount tolerance: 10 / 10

: 41D / available with/by-name, address: ANY BANK BY PAYMENT

: 43P / partial shipment: PERMITTED

: 43T / transhipment: PERMITTED

: 44A / on board/ dis/ taking charge: SEOUL

: 44B / for transportation to: CAPE TOWN

: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02/09/15

: 71B / charges : ALL BANK CHARGES OUTSIDE USA RCA FOR BENEFICIARY'S ACCOUNT

: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WITHIN 15 DAYS AFTER SHIPMENT DATE BUT IN ANY EVENT WITHIN THE CREDIT VALIDITY

: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WITHOUT

: 78 / instructions to pay/ acc/ nes bk :

+ NEGO BANK TO SWIFT/ TLX ADVISE ABSAZAJJ ATTN IBS CAPE/476 FOLLOWING DRAWING DETAILS : 1. TOTAL AMOUNT CLAIMED IN REIME 2. AMOUNT DRAWN IN ACCORDANCE WITH DOCUMENTS 3. INVOICE NUMBER(5). 4. NAME OF CARRYING VESSEL 5. BILL OF LADING NR AND SHIPMENT DATE 6. REIMB VALUE DATE 7. DISCREPANCIES – IF NONE STATE 'DOCUMENTS, INCLUDING STRICTLY IN ORDER' 8. PAYMENT INSTRUCTIONS

+ SEND DOCUMENTS, INCLUDING COPY OF DRAWING ADVICE TO ABSA BANK LTD., IBS CAPE, PO BOX 4888, CAPE TOWN 8000, RSA, BY REGISTERED WED AIRMAIL IN 2 LOTS

+ WE WILL COVER YOU IN ACCORDANCE WITH YOUR INSTRUCTIONS VALUE 4 DRAWING ADVICE TO ABSA BANK LTD

<표> 화환신용장 관련 SWIFT 서비스 내용

메시지포멧	서비스 내용	메시지포멧	서비스 내용
MT700/701	화환신용장의 발행	MT740	상환수권서의 발행
MT705	화환신용장의 예비통장	MT742	대금상환청구
MT707	화환신용장의 조건변경	MT747	상환수권서의 조건변경
MT710/711	제3은행의 화환신용장 통지	MT750	하자통지
MT720/721	화환신용장의 양도	MT752	지급/인수/매입의 수권
MT730	화환신용장의 수령확인	MT754	지급/인수/매입의 통지
MT732	하자서류의 접수통지	MT756	대금상환 또는 지급의 통지
MT734	거절통지	MT=Massage Type	

<표> MT700에 의한 화환신용장의 발행

MO	Tag	Field Name	MO	Tag	Field Name
M	27	Sequence of Total	O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M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O	42M	Mixed Payment Details
M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O	42P	Deferred Payment Details
O	23	Reference to Pre-Advice	O	43P	Partial Shipment
O	31C	Date of Issue	O	43T	Transhipment
M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O	44A	Loading on Board/ Dispatch/ Taking in Charge at/from
O	51a	Applicant Bank	O	44B	For Transportation to...
M	50	Applicant	O	44C	Latest Date of Shipment
M	59	Beneficiary	O	44D	Shipment Period
M	32B	Current Code. Amount	O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O	46A	Documents Required
O	39B	Maximum Credit Amount	O	47A	Additional Conditions
O	39C	Additional Amounts Covered	O	71B	Charges
M	41a	Available With ... By ...	O	48	Period for Presentation
O	42C	Draft at ...	M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O	42a	Drawee	O	53a	Reimbursing Bank
O	57a	"Advice Through" Bank	O	78	Instructions to the Paying/ Accepting/ Negotiating Bank
M : 필수사항 O : 선택사항					

제10조 조건변경

제10조

■ 제10조 조건변경

제 10조 조건변경

- a. 제3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 b. 발행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그 조건변경서에 의하여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변경에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확장함이 없이 조건변경을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에게 지체없이 통고하고 그 자신의 통지서로 수익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c.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승낙된 조건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의 제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한 그 자신의 승낙을 그러한 조건변경을 통지해 온 은행에게 통보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수익자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notification)를 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러한 통고(notification)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고(notification)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변경된다.
- d.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해 온 은행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모든 통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 조건변경의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조건변경의 거절의 통지로 본다.
- f. 조건변경이 특정기한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변경서상의 규정은 무시된다.

제10조 조건변경

제10조

■ 제10조 해설

UCP 500과 목적과 취지에서 전혀 변경이 없으며, UCP 600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문맥을 정리하였다.

- ☞ 수익자가 서류 제시 하기 전에 통지 은행(또는 제2 통지 은행)에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또는 수락 거절을 통지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 조건 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통지해야 함을 언급한 조항임.(UCP 500 9조 (d)(iii) 과 비교됨;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 ☞ UCP 500에는 없었지만, ‘Position Paper No. 1’에 있었던, 신용장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수락 거절과 관련된 시간제한에 대한 조건이 무시됨을 명시.
- ① 신용장은 제38조(양도가능 신용장)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 당사자(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조건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② 개설은행은 조건변경서를 발급한 날부터 조건변경서를 임의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한 날로부터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통지은행인 경우에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통지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그 사실을 개설은행과 수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확인은행은 변경 조건이 확인은행에게 불리한 조건이거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으로 변경조건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0조 조건변경

제10조

■ 제10조 해설

- ③ 통지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조건 변경의 수락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수익자가 수락 여부에 대한 의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에 수익자가 수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변경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수익자가 신용장 변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D 항에서는 수익자가 서류제시 이전까지 수락 또는 거절의 지시를 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조항은 제2통지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통지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의 지시서를 존중하기 위해 적용될 것이다. 서류제시 이전까지 어떠한 지시도 없다면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서류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수락 또는 거절했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⑤ E 항에서는 ucp 500에서의 “조건 변경서의 일부 수락은 거절의 통지로 간주된다.”라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여,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여러 개의 조건변경이 포함된 하나의 조건변경서에서 수익자에 유리한 일부 조건만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없으며, 하나의 조건 변경서에 있는 내용 전부를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부를 거절해야 한다.

제10조 조건변경

제10조

■ 제10조 해설

⑥ F 항에서는 조건변경서의 수락 및 거절과 관련하여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들의 논쟁을 없애기 위해 추가된 조항이다. 즉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조건 변경을 수락한 것을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시되며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침묵은 수락이 아니다)

⑦ 사례

신용장 개설 후 개설의뢰인이 사업 악화로 부도처리 되었다. 개설은행의 신용장 취소통지는 효력이 있는가?

-신용장의 취소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개설은행이 취소통보를 함으로서 수의자가 신용장을 사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출상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11조

■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 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 a.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인증된 전송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보며, 추후의 모든 우편확인서는 무시된다.

전송이 “완전한 명세는 추후 통지함(full details to follow)”(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명기하고 있거나 또는 우편확인서를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송을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은 행은 전송과 모순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체없이 유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하여야 한다.

- b. 신용장의 발행 또는 조건변경의 예비통지(“사전통지”)는 발행은행이 유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송부된다. 사전통지를 송부하는 발행은행은 자체없이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할 것을 취소불능적으로 약속한다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11조

■ 제11조 해설

기존 UCP 500 11조에서도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떠한 우편확인서도 발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UCP 500에서 규정되어 있던 “우편확인서가 송부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을 삭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우편확인서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우편확인서도 무시된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에 추가하여 우편확인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사전통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은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지체없이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를 취소불능으로 발행할 의무를 지며, 사전 통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이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를 그 이후에 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UCP 11조)

-사전통지 신용장(short cable)의 의미와 사용목적은?

사전 통지라는 것은 개설은행이 중요한 내용만 요약, 짧은 전신문을 만들어 통지은행으로 보내어 수의자에게 미리 통지해주도록 하는 예고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자명, 유효기일, 간략한 상품명세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통지 신용장이 개설되면 원본 신용장은 반드시 개설되기 때문에 수의자는 이 신용장을 근거로 상품제작에 착수하거나 선적준비등을 하는 것이다.

다만 SWIFT가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이나 TELEX로 개설된 신용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사전 통지 후, 원신용장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은행에 도착하였으나, 최근에는 SWIFT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신용장이 통지되므로 사전통지 신용장은 이용 빈도가 극히 적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12조 지정

■ 제12조 지정

제 12조 지정은행

- a.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수권은 그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은행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 b.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또는 연지급확약을 부담할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도록 그 지정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에 의한 서류의 수령 또는 심사 및 발송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의무를 그 지정은행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지정

■ 제12조해설

UCP 500 10조 c

- ① a 항에서는 지정은행이 신용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제(honour)나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용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신용장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용장 조건변경의 통지나 기타의 통신수단으로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b 항은 7조 c와 8조 b와 관련이 있다. 연지급, 인수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선지급, 연지급 신용장의 구매 또는 인수할 명백한 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칙은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구매나 선지급 허용 불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런 계약서를 기꺼이 발행했다면 구매나 선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③ c 항에서는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서류심사 후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는 것은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2조 지정

제12조

■ 제12조해설

④ 사례

1)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이 가능한가?

본조 b 항의 의미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설은행의 수권 속에서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매입하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며, 연지급신용장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매입이 가능하므로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정된 은행에서만 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한 매입제한신용장과 관련하여, 서류가 지정된 은행이 아닌 제3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되었다면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신용장이 이용될 수 있는 은행이며, 15조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용장 매입 제한이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으로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개설은행으로 직접 제출된 서류는 하자가 없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을 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부도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하자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정된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설은행이 매입제한은행 앞 사실 확인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금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하여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입금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

■ 제12조해설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해외법인이나 지점일 경우,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일 경우 아니면 지정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보상조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지불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비지정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의 신용장대금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만약 수익자가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